

서울특별시 마포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

(김윤정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-29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17. .

발 의 자 : 김윤정, 김영미, 김효식,
문정애, 서종수, 송병길,
이필레, 전승학, 차재홍

1. 제안이유

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사용기한 경과 및 변질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,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마포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
나.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(안 제3조~제4조)

다.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(안 제5조)

라.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 표창(안 제6조)

3. 관계법규

가.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4조

나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4조

4. 조 례 안 : 붙임

5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6. 기타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입법예고 : 2017. 3. 28. ~ 4. 1.(제출된 의견 없음)

서울특별시 마포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불용의약품”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.
2. “폐의약품”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·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마포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배출·수집·운반·처리 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폐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(이하 “불용의약품 등”이라 한다)의 관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국민의 책무) ① 국민은 의사·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.

② 국민은 폐의약품 배출시 관내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서 복약지도를 받은 후,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소재 약국 또는 구 보건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분리·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불용의약품 등의 관리) ① 보건소장 또는 구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.

②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·조정역할을 한다.

③ 구청장은 폐의약품을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, 발생량에 따라 수거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.

제6조(표창)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보건의료기본법

[시행 2016.11.30.] [법률 제14216호, 2016.5.29., 일부개정]

-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·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(財源)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, 의약품,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(危害)를 방지하고,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폐기물관리법

[시행 2016.7.21.] [법률 제13411호, 2015.7.20., 일부개정]

- 제14조(생활폐기물의 처리 등)** ①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,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.